

대구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가합20536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고**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4. D

5. 주식회사 E

피고 1, 2,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대하

**변론 종결**2021. 2. 25.

**판결 선고**2021. 4. 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9. 2. 9.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직불합의를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9. 2. 10.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직불합의를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9. 2. 11.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한 직불합의를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9. 3. 13. 체결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관한 직불합의를 409,754,8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229,142,446원, 피고 주식회사 B는 138,534,409원, 피고 D은 21,852,790원, 피고 주식회사 E은 20,225,17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9. 3. 13. 체결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채권에 관한 직불합의를 23,310,3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12,870,799원, 피고 주식회사 B는 8,007,424원, 피고 D은 1,263,112원, 피고 주식회사 E은 1,169,03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주식회사 F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8. 9. 14.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9. 9. 11. 보증원금 4억 7,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등의 경우에 F가 원고에 대해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F의 대표이사 G은 2018. 9. 14. 원고와 사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준수 등의

책임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해 F와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금형 및 기계에 관한 합의**

-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은 2019. 2. 9. 주식회사 H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금형을 9,000만 원에 반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H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2) 피고 A, B, C은 2019. 2. 10. 주식회사 I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형을 6,000만 원에 반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3) 피고 A, B, C은 2019. 2. 11. 주식회사 J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금형을 1억 8,000만 원에 반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4) 피고 A, B, D, 주식회사 E은 2019. 3. 11. F, 주식회사 K와 사이에, F가 K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기계를 840,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 중 피고 A이 409,754,815원, 피고 B가 138,534,409원, 피고 D이 21,852,790원, 피고 E이 20,225,17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K로부터 위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 5) 피고 A, B, D, E은 2019. 3. 13. F, L 주식회사와 사이에 F가 L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기계를 55,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 중 피고 A이 12,870,799원, 피고 B가 8,007,424원, 피고 D이 1,263,112원, 피고 E이 1,169,034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L으로부터 위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각 합의를 순서대로 '제○ 합의'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 1) F는 2019. 2. 15.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4. 3. 연체 대출원리금 478,231,262원을 대위변제하고, 2019. 4. 3.부터 2019. 5. 14.까지 위 대위변제금 중 15,447,329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위 15,447,329원 대한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165,65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 대하여 취득한 475,000,000원의 사전구상금 채권 또는 462,949,586원(= 대위변제금 중 회수금을 공제한 잔액 462,783,933원 +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65,653원)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F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2) 제1, 2, 3 합의에 관한 예비적 청구 제1, 2, 3 합의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A, B, C은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금형을 반출하고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F를 대위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 1) 제1, 2, 3 합의에 관한 주장 제1, 2, 3 합의는 피고 A, B, C과 H, I, J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채무자인 F가 행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 2) 제4, 5 합의에 관한 주장 제4, 5 합의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A, B, D,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3. 판단

### 가. 제1, 2, 3 합의 부분에 관한 판단

-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 2, 3 합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채무자인 F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3 합의 주체가 F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 2, 3 합의가 채무자의 법률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제1, 2, 3 합의 당시 작성된 각 합의서에는 F가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F의 채권단 공동대표로서 피고 A, B 및 F의 근로자 공동대표로서 C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② 제1, 2, 3 합의에 각각 참여한 증인 O, M, N은 모두 각 합의 당시 F의 대표자가 참여한 사실이 없고, F는 위 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③ 제1, 2, 3 합의는 각각 H, J, I이 F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금형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F의 채권단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합의금액 자체도 F의 채권단 측 요구에 따라 금형반출의 대가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인다(증인 O, M는 각각 위 금형반출 당시 H, I과 F 사이에 금형대금에 관한 정산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 B, C이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금형을 반출하고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1, 2, 3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F와 H, J, I 사이의 금형대금 정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나. 제4, 5 합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것, 즉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제4, 5 합의 당시 F가 합의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4, 5 합의 당시 별지 목록 제4, 5항의 각 기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프레스, 오면가공기'라 한다)가 F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F가 이에 관한 처분을 한 것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프레스는 F가 주식회사 P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P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것이었으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P이 이 사건 프레스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sup>1)</sup>. 실제로 이 사건 프레스에는 '본 제품은 P의 양도담보설정 목적물이므로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당사의 사전 허락 없이 매매·양도·임대·담보제공·점유이전 등의 어떠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오면가공기는 F가 주식회사 Q과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통해 Q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Q에 넘겨준 후 이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므로, 제5 합의 당시 이 사건 오면가공기의 소유권은 Q에게 있었다<sup>2)</sup>. 실제로 이 사건 오면가공기에는 '시설대여회사: Q, 시설대여 동의기간: 2016. 10.부터 채무상환 시까지, 이 물건은 Q의 소유물이며 시설대여 동의기간 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표지가 붙어 있었다.

③ 제4, 5 합의는, 피고 A이 F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F의 적극재산을 물색하던 중 위 ①, ②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P, 오면가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P, Q, F 등과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F는 제4 합의 당시 P에 420,245,185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5 합의 당시 Q에 28,689,630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4, 5 합의를 통해서야 비로소 각 매수인인 K, L이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제4, 5 합의는 F가 K, L에 대한 채권을 처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제4, 5 합의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4, 5 합의가 당시 F가 K, L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본 피고 A, B, D, E의 F에 대한 기존 채권액 및 이들이 제4, 5 합의를 통하여 변제받은 액수, 양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A, B, D, E이 F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판사정옥도

### 판사박지원

### 판사항윤철

### 별지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등 참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2) 금융리스의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이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등 참조),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의 채권자는 리스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리스회사는 소유자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